

대전지방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1952(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9나1969(반소) 차량할부금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종환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4가단2089(본소), 2014가단
6500(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24.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894,586원과 그 중 31,135,514원에 대

하여는 2014. 2. 27.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759,072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1,424,4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본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8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2,460,3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 23. 설립되었다.

나. 원고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2006년경 소외 회사와 원고 소유 차량에 관하여 렌트카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2006. 7. 13.부터 2007. 6. 20.까지 소외 회사 명의로 자동차 16대를 이용하여 렌트카 영업을 한 것으로 인해, 원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 소외 회사가 2007. 10. 30.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D는 2008. 1.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7. 30. 설립되었고, D가 2010. 3.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별지 1 구입차량 목록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자동차는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목록 순번 제5 내지 38번 기재 각 자동차는 피고 회사 명의로 각 매수하였고(이하 별지 1 구입차량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그 매수대금은 별지 1 구입차량 목록 출고가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계산으로 매수대금 합계 719,457,369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수대금에는 위 매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렌트카 지입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계약상 지위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총 환급세액으로 추정되는 71,94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¹⁾ 참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이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판매업자들이 과세 관청에 신고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

1)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 여부 및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환급받은 구체적인 환급세액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관계 법령이 정한 자동차 보유대수, 보유 차고면적, 영업소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9조²⁾),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지입한 후 피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의로 자신의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당시 부가가치세법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고는 위 매수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여 과세 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회사가 이를 피고 회사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과세 관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가 환급받은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대

2)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0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가로 지입차량 1대당 월 60,000원(2009. 11.경부터는 지입차량 1대당 월 50,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중 별지 2 운영비 기재와 같이 76,9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입한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321,080원, 차량할부금 1,672,452원, 과태료 2,765,54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미지급 운영비와 대납 비용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정산받은 45,834,48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는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반소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대납 비용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지입차량 1대당 월 35,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입차량 1대당 월 60,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금액이 과다하다고 피고 회사에 항의하였으나, 지입차주 입장에서 피고 회사의 금전지급 요구를 무시할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일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운영비 지급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2007. 10. 25.부터 2011. 1. 12.까지 173,389,408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입차량과 관련한 운영비 및 대납 비용 중 정산되지 아니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운영비 청구에 관한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회통념상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보수의 지급 및 그 액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위임을 받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고,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입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07. 12. 27.과 2008. 2. 4. 각 2,040,000원을 원고의 지입차량 34대에 대한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운영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③ 피고 회사는 '지입차주로부터 지입차량 1대당 월 60,000원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이외의 다른 지입차주들과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 계약서(을

제21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입차량 1대당 월 35,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지입차량 1대당 월 50,000~60,000원의 운영비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 주장의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납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원고가 지입한 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을 제1, 2 내지 7호증, 을 제15호증의 21,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지입차량과 관련하여 2010. 6.경 자동차세 합계 321,080원, 2010. 10. 16. 차량할부금 1,048,853원, 2011. 11. 28. 차량할부금 합계 623,599원을 각각 대납한 사실, 원고의 지입차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부과되어 피고 회사가 납부한 과태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65,5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납 비용은 수임인인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차량번호	속도위반 과태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원)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원)
Q	286,180		
R	69,840	74,340	
S	226,980		
T	68,400		

U	743,660		
V	69,360		
W	68,400		
P	189,580		
O	69,360		
X		36,000	
N			437,900
Y			425,540
각 합계	1,791,760	110,340	863,440
전체합계			2,765,540

다. 원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의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변제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25.부터 2011. 1. 12.까지 173,389,408원을 피고 회사 명의로 된 3개의 계좌(농협은행 AB, 하나은행 AC, 국민은행 AD)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위 3개의 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가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가 관리하면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입출금되었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운영비 내지 대납 비용을 정산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미지급 운영비 및 대납 비용의 합계 81,729,072원[= 미지급 운영비 76,970,000원 + 대납 비용 4,759,072원(= 자동차세 321,080원 + 차량할부금 1,672,452원(= 2010. 10. 16. 지급한 1,048,853원 + 2011. 11. 28. 지급한

623,599원) + 과태료 2,765,540원]]에서 피고 회사가 미지급 운영비 원금의 일부로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5,834,486원³⁾을 제외한 나머지 35,894,586원과 그 중 나머지 미지급 운영비 31,135,514원(= 76,970,000원 - 45,834,486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⁴⁾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 대납 비용 4,759,0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⁵⁾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반소장에서 반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운영비 등 채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45,834,486원의 정산금을 원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는데, 위 정산금이 원고의 운영비 채무와 비용상환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원고의 운영비 채무가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원고의 비용상환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으므로, 위 정산금은 원고의 운영비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477조 제2호).

4) 원고의 운영비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된다.

5) 원고의 비용상환 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등 참조).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	----	-----

	판사	박효송
--	----	-----

	판사	신옥영
--	----	-----

[별지 1]

지

구입차량목록

		구입차량	구입가격	비고
1	2007. 7. 13.		18,647,652	
2	2007. 7. 26.		9,785,412	
3	2007. 7. 27.		19,031,311	
4	2007. 8. 10.		19,418,183	
5	2007. 9. 11.		19,395,947	
6	2007. 9. 19.		11,913,637	
7	2007. 9. 19.		19,122,728	
8	2007. 9. 19.		12,213,637	
9	2007. 9. 19.		17,174,364	
10	2007. 9. 20.		9,785,412	
11	2007. 9. 20.		19,669,492	
12	2007. 9. 20.		10,333,638	
13	2007. 9. 20.		17,174,364	
14	2007. 9. 20.		20,713,637	
15	2007. 9. 21.		25,550,395	
16	2007. 9. 21.		29,363,749	
17	2007. 9. 21.		25,550,394	
18	2007. 9. 21.		14,938,181	
19	2007. 9. 27.		25,550,394	
20	2007. 9. 27.		25,550,394	
21	2007. 9. 27.		43,126,346	
22	2007. 9. 27.		25,550,394	
23	2007. 9. 28.		20,895,455	
24	2007. 10. 11.		8,026,365	
25	2007. 10. 11.		23,258,181	
26	2007. 10. 12.		20,758,181	
27	2007. 10. 23.		11,746,365	
28	2007. 10. 25.		17,450,909	

순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지명	차대번호	출고가격	비고
29	2007. 11. 28.				20,852,727	
30	2007. 11. 28.				25,602,357	
31	2007. 11. 28.				43,126,346	
32	2007. 11. 28.				11,746,365	
33	2007. 11. 28.				11,746,365	
34	2007. 11. 28.				9,761,776	
35	2007. 11. 28.				13,638,613	
36	2008. 2. 11.				12,847,272	
37	2008. 4. 24.				14,665,454	
38	2008. 4. 25.				13,774,977	
합 계					719,457,369	

[별지 2]

< 운영비 >

년/월	차량 보유 대수	금액	비고
2008.2월	34	2,040,000원	60,000/1대당
2008.3-4월	35	4,200,000원	
2008.5-8월	37	8,880,000원	
2008.9월~			
2009.1월	35	10,500,000원	
2009.2-10월	30	16,200,000원	
2009.11월	31	1,550,000원	50,000으로 조정/1대당
2009.12월	19	950,000원	
2010.1-4월	17	3,400,000원	
2010.5-11월	15	5,250,000원	
2010.12월	16	800,000원	
2011.1월~			
2013.5월까지	16	23,200,000원	
합 계		76,970,000원	